

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90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1. 17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취약계층·중장년층의 고용촉진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필요
- 인턴지원금, 채용장려금, 고용유지장려금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'취업지원 사업'의 구체화(안 제1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)
- 기업의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·중장년층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지원금, 채용장려금, 고용유지장려금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명시(안 제15조 신설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약계층 및 중장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턴지원금, 채용장려금, 고용유지장려금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됨.